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8호
2019년1월25일(금)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감동시정
- 1. 균형있는상생경제
- 1. 사람중심나눔복지
- 1. 품격있는문화관광
- 1. 살기좋은정주환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여수시 보건소 식품위생과 고시 제2019-1호 여수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3
특례고시 개정안 고시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245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19-246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2
- 여수시 공고 제2019-247호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13
- 여수시 공고 제2019-249호 도로 지정 공고[소호동-이선*(소호동 1037)] /14
- 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 2019-11호 미평동 9통장 모집 재공고(3차) /15
- 여수시 미평동 공고 제 2019-12호 미평동 5통장 모집 재공고(2차) /17

회								
관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 고

「여수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특례 고시」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25일

여 수 시 장

「여수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특례 고시」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옥외영업 허용장소를 명확히 하고, 옥상영업으로 인한 소음, 과도한 조명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에 따른 시설기준 등을 보완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개정(옥외영업) 및 신설(옥상) (안 제2조)

나.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정 신설(안 제4조)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녹지지역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주거(일반·준주거)지역

•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읍면동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지역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 다. 옥외영업 신고 또는 폐업신고 조항 신설(안 제5조,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 라. 옥상영업의 영업시간(09:00~23:00) 단서 조항 신설(안 제6조 제1항)
 - 옥상영업을 제외한 시설은 옥내 영업시간
- 마. 영업자의 책무사항 조항 신설(안 제8조 제4호~제6호)
 - 영업시간 준수, 옥외 시설에서 조리시설 설치와 조리 불가, 영업장 내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 제공
 - 옥외영업장 금연안내 및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예고기간 : 2019. 1. 26. ~ 2019. 2. 18. (24일간)

4. 개정 고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식품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받는사람 : 여수시장(식품위생과장) 우)59674 여수시 시청서4길 47(학동)
- 전 화 : 061) 659-4222 FAX : 061) 659-5842
- 이메일 : mi502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FAX), 직접방문, 이메일(E-Mail) 제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고시명 : 「여수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특례 고시」전부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고시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특례 고시 전부개정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 규정의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영업”이란 신고 된 영업장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신고 영업장과 연결된 대지의 지상 또는 동일 건물에서 층을 같이하는 옥상, 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2. “옥상”이란 1층 이상 건축물의 지붕 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으로 한다.

제4조(옥외영업 허용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제8호 가목 5), 마)에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녹지지역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읍면동장이 옥외영업 가능지역으로 시장에게 요청하는 지역
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등) ①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옥외영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옥외영업을 폐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옥외영업 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①옥외영업 시간은 옥내영업 시간으로 한다. 다만, 옥상영업 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시장은 민원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민원발생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제3조의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영업 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여야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4. 옥외영업자는 제6조의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옥외 시설에서는 조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조리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업장에서 조리·가공한 음식만을 제공하여야 한다.
6. 옥외영업장은 금연구역임을 안내하고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적용제외) 동 고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옥외영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제외하고, 옥외영업으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발생 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고시 이전에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고시 제3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별표 1] 옥외영업장의 시설기준 개정(안)(제7조 관련)

1. 옥외영업장의 면적은 영업장 신고 면적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옥외영업장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구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3. 옥외 시설에서는 조리 시설(불판, 음식물을 덮혀 먹을 수 있는 휴대용 가스 레인지 등을 포함한다)을 설치 할 수 없다.
4. 옥외영업장의 시설은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세척 및 소독이 용이한 재질이어야 한다.
5. 위에서 규정한 시설물 이외의 어떤 시설도 추가로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객의 출입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옥상·베란다 등의 경우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옥외영업장에는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 시설물 등은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둔덕동 568-2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명 칭: 녹지공원(원학동 방풍림 등)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95,889㎡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2017. 7.27.

나. 준공년월일: 2018.11.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화장동 145-2, 선원동 630-2 번지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명 칭: 녹지공원(선원뜨레 방풍림 등)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 적: 48,267.6㎡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2017. 7.27.

나. 준공년월일: 2018.11.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공사완료 공고

여수 도시계획시설(녹지공원)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 .

여 수 시 장

1. 사업시행지 위치: 여수시 해산동, 화장동, 소라면 덕양리 일원

2. 사업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여수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나. 명 칭: 녹지공원(덕양양지바름 방풍림 등)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면 적: 66,615.0m²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롯데케미칼(주) 대표이사 김교현/여수시 여수산단4로 53
- 여천NCC(주) 대표이사 최금암, 이규정/여수시 여수산단3로 2
- GS칼텍스(주) 대표이사 허진수/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상우/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 한화케미칼(주) 대표이사 김창범/여수시 여수산단3로 117
- KPX라이프사이언스(주) 대표이사 양준영, 최수동/여수시 여수산단2로 84

5. 사업의 착수일 및 준공일

가. 착수년월일: 2017. 7.27.

나. 준공년월일: 2018.11.30.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061-659-4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소호동 1037번지상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1. 도로 지정 공고 내역

도 로 위 치	도로길이 (m)	도로너비 (m)	도로면적 (㎡)	관련지번 및 이해 관계인 동의 여부	비고
소호동 1037	40.65	1.08	46	도로대장 참조 (허가민원과 비치)	

2. 관련도서 : 생략(여수시청 허가민원과에 비치)

3. 기타사항

도로 지정과 관련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청 허가민원과
(061-659-41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1. 25.

여 수 시 장

미평동 9통장 모집 재공고(3차)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평동 9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미평동 9통장 : 주공아파트 101~102동)
2. 접수기간 : 2019. 1. 25.(금) ~ 2019. 2. 1(금)[8일간]
3. 접수장소 : 미평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접수)
4.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들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결격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정방법 : 선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임명
7. 제출서류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 주요경력 및 증빙서류(자원봉사실적, 수상내역 등) 각 1부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
 -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
8. 임 기 : 해임에 따른 잔여임기(1회 연임 가능)[임명일 ~ 2020. 6. 27.]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평동행정복지센터(☎ 65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통장으로 임명
(2명 이상 복수 추천)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1명을 통장으로 임명

2019년 1월 25일

미 평 동 장

미평동 5통장 모집 재공고(2차)

『여수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및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미평동 5통장을 모집하오니 희망자는 접수기간 내에 신청 바랍니다.

1. 모집대상 : 1명(미평동 5통장 : 한국화약아파트 2~7동, 인근 자연부락 일부)
2. 접수기간 : 2019. 01. 25.(금) ~ 2019. 2. 1.(금)[8일간]
3. 접수장소 : 미평동행정복지센터(직접 방문 접수)
4. 자격요건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들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5. 결격대상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민·형사상 사건에 소추되어 조사 중인 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선정방법 : 선정심사기준에 의한 심사를 통해 임명
7. 제출서류
 -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1부.
 - 주요경력 및 증빙서류(자원봉사실적, 수상내역 등) 각 1부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자대표회의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
 -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
8. 임 기 : 2019. 02. 06. ~ 2021. 02. 05.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미평동행정복지센터(☎65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추천한 사람 중 1명을 통장으로 임명
(2명 이상 복수 추천)
- 주민총회 또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에 거주하는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한 사람 중에서 1명을 통장으로 임명

2019년 1월 25일

미 평 동 장